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이행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지정 협의 등 연안오염총량관리와 관련한 시·도 사무의 특례시 특례 이양(안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 1)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중 특례시가 총량규제 실시해역 전부를 관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었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협의, 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하여 부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례시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군수”를 “시장(특례시의 장은 제외한다)·군수”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례시 사무의 예외적 처리) 2개 이상의 시·군이 관할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

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를 “시장(특례시의 장은 제외한다)·군수”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개 이상의 시·군이 관할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은 평가보고서를 관할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u>시·도지사와</u> 협의하여 오염물질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이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제11조(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① ----- ----- ----- ----- ----- --- <u>시·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과</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오염물질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의 관할 <u>시·도지사와</u>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① ----- ----- ----- ----- ----- ----- ----- <u>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과</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항목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② ----- -----

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총량관리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4.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

5.·6. (생략)

③ 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4. (생략)

④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

----- 시·도지사
나 특례시의 장--.

1. ~ 3. (현행과 같음)

4. -----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

5.·6. (현행과 같음)

③ -----
--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은 -----

-----.

-----.

1. ~ 4. (현행과 같음)

④ -----

라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제2항제6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2. 시장·군수는 수립한 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⑤·⑥ (생략)

<신설>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

-----.

-----.

1.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특례시의 장은 -----

2. 시장(특례시의 장은 제외한다)·군수-----

⑤·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특례시 사무의 예외적 처리) 2개 이상의 시·군이 관할하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2조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장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경우에는 특례시의 장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제14조(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① -----

② · ③ (생략)
<신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2개 이상의 시 · 군이 관할하
는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에도 불
구하고 특례시의 장은 평가보고
서를 관할 도지사를 거쳐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7